대외비

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

대한민국법원

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

2016. 2. 24.

기 획 조 정 실

대외비

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

2016. 2. 24. 기획조정실

1. 검토 배경

가. 사건 진행 경과

1 1. 29.(금) 국제인권법연구회 '인사모' 토론회

- [발표] 송○○ 판사 "법관의 사법행정참여 방안에 관한 소고"
- [참석] 사○○, 이○○, 정○○, 이○○, 김○○ 부장판사, 박○○, 홍○○, 이○○, 이○○, 김○○, 이○○, 신○○, 진○○, 류○○, 홍○○ 판사
  - [밑줄 표시] 우리법연구회 前, 現 회원(이하 같음)
- [내용] 발표문의 要旨

- [헌법 정신] 헌법상 법관 독립의 원칙은 '법관의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'을 규정 ⇨ **수직적 사법행정체계**는 헌법의 요청에 부합하지 않음
- [법원조직법의 개정 필요성]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**수직적, 관료적 사법행정체계**를 규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은 **헌법의 요청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정되어야 함** ⇨ 단, 현실적으로 개정은 쉽지 않음
- [무엇을 할 것인가?] 법원조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**판사회의의 활성화 및 사실상 의결기구화**를 통하여 **수직적, 관료적 사법행정체계**를 **수평적, 민주적 법원운영방식**으로 바꾸어야 함 ⇨ **사법행정위원회를 판사회의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**

☑ 송○○ 판사(○○기)

▶[특징]

- 우리법연구회,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 리더

(사진)

- 인사모 등 각종 소모임을 결성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現 활동 방식은 송판사가 우리법연구회에서 구축한 활동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임

▶[주된 관심사]

- **[요약] 송○○ 판사의 주된 관심**은 '사법행정위원회의 활성화'보다는 **'판사회의의 활성화'**에 있음 ☞ 사법행정위원회를 **판사회의 활성화의 수단**으로 삼는 것임
- **[목적]** "대법원장, 법원행정처 중심의 수직적 사법행정" ⇨ **"판사회의라는 회의체 중심의 수평적 사법행정"**으로 전환
- **[수단]** ① 각급 법원에서의 판사회의 활성화, ② 미국연방사법회의와 유사한 전국 단위의 전체판사회의 결성 및 활성화

2 2. 1.(월) 송○○ 판사가 코트넷의 '제도개선법관토론방' 게시판에 "법관의 사법행정참여 제도화에 관한 건의문" 게시

☑ 건의문 내용 요약

1 **사법행정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에 대한 판사회의 선출 필요**

- 위원의 2/3 또는 적어도 과반수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해야 함

2 **각 위원회를 총괄하는 전체회의를 만들어야 함**

3 **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판사회의에서 투명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함**

- 판사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, 각급 법원 판사회의 내규 개정 필요

● **법관들의 반응** (건의문의 게시 범위: 법관 限定)

- 2. 24. 01:00 현재 **조회수 636, 댓글 27개**
- 2015. 9. 15. 제도개선법관토론방이 개설된 이후 게시된 총 38건의 게시글 중 **조회수 636회**로 **5위**, **댓글수 27개**로 **2위** ☞ 조회수가 더 많은 4개의 글들은 모두 부장·배석 관계 등 합의부 운영에 관한 것임
  - **[조회수]** ① 801 > ② 741 > ③ 670 > ④ 665 > **⑤ 636** > ⑥ 606
  - **[댓글수]** ① 32 > **② 27** > ③ 22

● **분석 ⇨ '댓글 작성' 등 조직적 대응의 분위기가 감지됨**

- 송판사의 게시글이 법관들의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긴 하나, **조회수에 비하여 댓글수가 이례적으로 많은 것이 특징**임 ☞ 우리법연구회, 국제인권법

연구회 핵심 리더인 송○○ 판사가 자신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보임

- 댓글 작성한 대부분의 판사들이 **우리법연구회,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**이고, 비회원인 일부 판사(예: 강○○ 판사)는 송판사와 같은 방 사용

- 송판사와 친분이 있는 서울중앙지법 소속 모 판사가 전○○ 부장판사(前 사법지원총괄심의관)에게도 댓글 작성을 부탁하였다고 함

3 2. 15.(월) 김○○ 부장판사가 법률신문에 "판사와 사법행정"이라는 제목의 칼럼 기고하여 송○○ 판사의 주장 소개

● [기고 경위] **송○○ 판사 등의 부탁**을 받은 것으로 보임

- 김○○ 부장판사는 **2015년까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간사**였음

- 송○○ 판사의 2. 1.자 코트넷 게시글이 **주요 일간지에 보도되지 않자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**을 통하여 **평소 친분**이 있던 법률신문 칼럼 필진인 김○○ 부장판사에게 부탁한 것으로 보임

☑ 김○○ 부장판사 칼럼 中 송판사의 주장을 소개한 부분

▶최근 법원행정처는 '사법행정의 주요영역에 관하여 전국 법관들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(사법행정위원회)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방안'에 관하여 발표하였다. 그 발표 후 **코트넷의 제도개선법관토론방**에는 이에 공감하면서 **'사법행정위원회에 참여할 대표의 3분의 2 또는 과반수는 각급 판사회의에서 직접 선출되어야 한다'는 건의문이 게시**되었고, **많은 판사가 이를 지지하는 글**을 올리고 있다.

4 2. 23.(화) 경향신문에 송○○ 판사의 주장 소개하는 기사 게재

● [게재 경위] **송○○ 판사 등이 코트넷 게시글을 경향신문에 전달**한 것으로 추측됨

☑ 침묵 깬 판사들 "사법행정 참여 위원 우리가 뽑자" (경향, 2. 23.자)

22일 법원에 따르면 내부게시판 '코트넷'에 서울중앙지법 송○○ 판사가 '법관의 사법행정참여 제도화에 관한 건의문'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. **송 판사는 이 글에서 "사법행정위원회(가칭)에 참여할 위원들을 판사회의를 통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해야 한다"며 "어떤 경우라도 각 위원들의 과반수는 선출된 판사로 구성해야 한다"고**

지적했다. 이 글에는 다른 판사들의 지지글도 다수 올라오고 있다.

▣ 5 **2. 26.(금) 국제인권법연구회 '인사모' 토론회 개최 예정**

● "사법행정 참여 판사의 대표성 확보 등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 토론회"

- **[주제1] 판사회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**
  - 발표자: 김○○ ○○지법 부장판사(30기, 2014년도 ○○○○지법 단독 판사회의 의장)
- **[주제2] 각급 법원 판사회의 내규 분석 및 개정안 제시**
  - 발표자: 홍○○ ○○○○지법 판사(35기, 익명카페 이사야 운영자)
- [참석 예정] 김○○, 김○○ 부장판사, 박○○, 박○○, 홍○○ 판사, 김○○ 부장판사, 이○○, 이○○, 문○○, 진○○, 류○○, 이○○ 판사 (2. 24. 03:00 현재)

나. 분석과 전망

▣ **사건 경과를 볼 때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 분위기가 감지됨**

● 핵심 그룹은 주로 **우리법연구회 前, 現 회원**이고, 주변 그룹은 주로 **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**들임

▶**핵심 그룹**
[우리법] 이○○, 김○○, 정○○, 이○○, 유○○, 김○○ 부장판사, 박○○, 박○○, 송○○, 홍○○, 이○○ 판사
[인권법] 김○○ 부장판사
▶**주변 그룹**
[우리법] 이○○ 판사
[인권법] 이○○, 이○○, 신○○, 이○○, 문○○, 진○○, 류○○, 홍○○ 판사

▣ **조직적 활동 분위기를 추정할 수 있는 징후들**

● 송○○ 판사 게시글에 대한 **댓글수가 조회수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많음**

- 송판사와 친분이 있는 **일부 판사들이 댓글 작성을 독려**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(예: 전○○ 부장판사에 대한 댓글 작성 독려)

- 송판사의 게시글에서 **'사법행정위원회'**라는 법원행정처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정확한 명칭 사용

  - **'사법행정위원회'라는 명칭**은 사법행정위원회 설립 TF 내부 보고서 이외에는 언급된 적이 없음

  - 송○○ 판사가 **행정처 내부 人脈 활용**하여 **행정처 보고서를 입수**한 것으로 추측됨

- **송판사의 글이 코트넷에 게시되고 한참 지난 후** 법률신문 칼럼, 경향신문 기사에 송판사의 주장이 보도됨

- **송판사의 발표문**에 **구체적인 실행 전략**이 기재되어 있음

> ☑ **송○○, "법관의 사법행정 참여 방안에 관한 소고" 中 (코트넷 게시글 첨부파일)**
>
> **"4. 2016년 판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**
>
> 가. **판사회의 실질화, 정례화**를 위한 각급 법원 내규 개정 작업 및 직급별 판사회의 정례화
>
> **나. 판사회의를 통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선출방식 건의 및 위원회 위원 참여**
>
> 다. 판사회의의 기관(의장, 간사, 운영위원) 선출방식에 있어서 **직선제 도입** 및 **후보 참여**
>
> 라. **전국법관회의 창립**을 위한 연구 및 기초 작업"

- 사법행정위원회 및 판사회의에 관한 인사모 토론회를 연속하여 개최

  - 1. 29.(금) 1차 토론회에 이어 2. 26.(금) 2차 토론회 개최

▣ 조직적 활동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대응 방안 확립 필요

- 현재 핵심 그룹은 **① 코트넷에 건의문 등 게시, ② 언론보도, ③ 토론회 개최 등**의 방법을 활용 중

-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으로 **'사법행정위원회' 출범 의의가 크게 반감될 우려** 존재 ⇨ **치밀한 대응 방안을 사전해 마련하는 것**을 통해 소수

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이 ▲다수 일반 판사들의 호응을 얻는 것을 차단하고, ▲핵심 그룹을 고립시킬 필요가 있음

2. 핵심 그룹 주장의 함의·파급효과 분석

▣ 긍정적 함의·파급효과

● 1위원회 자체에 대한 事前 붐업(boom-up) 효과 기대

- 위원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**법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**임 ⇨ 공식 발표 후에는 붐업 과정이 필요

- 아직 출범 전이기는 하나, 현재까지는 **위원회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이 부족**함 ⇨ 각종 개선 요구는 그 자체로 **적극적·긍정적인 관심을 고조시키는 효과**가 있을 것임

● 2운영 과정에서 실질적 참여 기능 극대화 기대

- 실제로 선정된 위원은 **강한 주인의식**을 가지고 위원회에 참여하게 될 것

- **법관들 역시 위원회의 운영에 좀 더 적극적**으로 관심을 두고, 위원들에게 솔직하고 생생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을 것

▣ 부정적 함의·파급효과

● 1특정 소수에 의한 소통 창구 독점 우려

- 대체로 소극적인 성향을 가진 법관들의 특성상, 스스로 출마하여 선출되는 법관들은 단순한'사법행정에 대한 주인의식과 사명감'을 가진 것이 아니라,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음

- '가장 적합한 사람'이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, 특별한 목적·의도가 있는 사람'이 선출되는 결과가 우려됨 ⇨ 나아가 **특정 소수 세력이 위원회를 장악**할 우려가 있음

● 2전체 법관 여론 왜곡 우려

- 일단 선출된 이후에는 일종의 대의제 기관 ⇨ **위원의 독자적인 견해도 전체 법관의 여론으로 해석될 수** 있음

- 특히 **전체회의에서 누구나 모든 안건에 관하여 토론**할 수 있게 되면 **위원 하나하나의 개성이 증폭** 가능 ⇨ **전체 법관 여론이 왜곡**될 우려도 있음

● 3사법부 **위기 상황 발생 시에 대립·갈등 증폭 수단화** 우려

- 위원회 구성이 왜곡되거나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·비대해질 경우 **오히려 갈등의 소지를 제공하고 이를 증폭**시키는 역기능이 우려됨

- 특히 **피드백을 강화하자는 요구**는 위기 상황 시에 자칫 **대립·갈등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할 위험성**이 있음

● 4**판사노조 등 법관권익옹호를 위한 세력화의 단초 제공** 우려

- 사실, 위원회 구성에 관한 각종 개선 요구가 있을 경우 **가장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할 측면**이 바로'법관권익옹호를 위한 세력화와의 연관성'임

- 이미 송 판사의 게시글에 대한 **댓글에 (방론이기는 하나)'판사노조'에 대한 언급**이 있기도 함

- 위원회의 **구성과 운영이'어떠한 적정선'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**(이에는 **지나치게 비활성화**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**지나치게 활성화**되는 경우도 포함함)에는 **곧바로 법관권익옹호를 위한 세력화에 영향**을 줄 수 있음

● 5**법원공무원단체(법원노조) 활동에 간접적·부정적 영향** 우려

- 위원회 활동이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활성화될 경우 법원공무원단체 활동에도 **시너지 효과를 미치게 될 것**임 ⇨ **노사협의회에 유사한 정책협의기구 설치·실시 요구가 강화**될 우려가 있음

3. [총론] 대응의 전제 조건·유의점

▣ 1 **요구 수용 시 不可逆性**

● 요구의 방향이 **'사법행정권의 하향 이양'**이라는 측면에서 **한번 수용할 경우 이를 되돌릴 수는 없음**에 유의하여야 함

▣ 2 **한편, 요구 불수용 시에도 요구 방향대로 제도 變遷 가능성**

● 위원회 출범 후 특히 까다로운 부분이 위원 인선 작업이고,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해야 할 **각급 법원 수뇌부도 이에 대한 부담**을 가질 수밖에 없음 ⇨ 이에 관한 **마찰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속 법원 법관들에게 선택권을 사실상 위임하려는 움직임**이 있을 수 있음

- **소속 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는 모양새에서 시작하여 결국 직접 선출도 묵인**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음

- 출범 첫해에는 이에 대한 규제가 가능할는지 몰라도 **해가 거듭될수록 누수 현상**이 나타날 수 있음

▣ 3 **지나친 강경 대응 시에는 후폭풍·반작용 우려**

● '민주적 정당성', '절차적 정당성'이라는, **확장성이 매우 강한 명분을 확보함** ⇨ 이를 강하게 거부할 경우 불필요한 마찰 우려

▣ 4 **반면, 현재에는 요구에 대한 관심 자체가 그리 크지 않음**

● 방식 자체가 다소 급진적이고 생경하여 **'제안 자체'에 대한 격려와 관심이 있을 뿐 '요구 관철'에 대한 관심이 크지는 않음**

- **과거 서울중앙지법**에서 **단독판사회의 의장이 직접 선출**되기는 하였으나, 해당 법원 **내규 개정 과정에서는 대다수 법관들이 무관심 내지 거부감**을 드러내었던 전례 참고

- **현재 이미 위원 직선제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을 담은 글이 게시**됨

4. [각론1] 대응 방안

가. 가능한 대응 방안

1 무시 전략

▣ **내용**

- **법원행정처의 구상**만을 **無色透明**하게 설명
- **핵심 그룹 주장**의 요지인 **'위원의 2/3 또는 적어도 과반수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'**에 대하여 **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음**

☑ **'무시 전략'에 따른 코트넷 공지문 (예시)**

▶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(제5조 제1항). 위원의 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**심급, 권역, 직급 등 전국 법관의 다양한 인적 구성을 반영하면서도 실질적인 토론이 가능하도록 적정 규모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요청**이 고려되었습니다. 한편, **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되, 법원행정처장은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고등법원장에게 관할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법관에 대한 추천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**(제5조 제3항). 실제 운용과정에서는, **각 고등법원 권역별로 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의 수를 결정**한 다음, **고등법원장이 관할 구역 내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급, 직급 및 성별 등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위원을 추천**하고, **법원행정처장은 고등법원장의 추천을 존중하여 위원을 위촉**하게 될 것입니다.

▣ **논거**

- **핵심 그룹**은 어차피 **소수** ⇨ **多數의 일반 판사**는 판사회의를 통한 선출 주장에 별다른 **관심이 없음** ⇨ 그대로 두면 **핵심 그룹의 주장은 少數의 목소리로서 조용히 묻힐 것임**

- 현재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는 '사법행정에 판사들의 참여를 확대하자는 것'으로서 개혁적인 정책

- 핵심 그룹의 주장은 법원행정처의 개혁 정책을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견인하겠다는 것임 ☞ 핵심 그룹의 주장은 그 성격상 파괴력을 갖기 어려움

- 신○○ 대법관 사태, 서○○ 판사 사태처럼 '법관의 독립 침해', '연임 탈락' 등 다수의 판사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재판, 인사, 사무분담과 관련된 주장이 아님

● 핵심 그룹의 주장에 답변할 경우 **핵심 그룹의 주장을 둘러싼 논쟁**이 불필요하게 **확대될 우려**가 있음 ⇨ 핵심 그룹이 설정한 의제에 **법원행정처가 끌려 다니는 결과** ⇨ **사법행정위원회 출범의 취지가 크게 반감됨**

▣ 부작용

● 핵심 그룹은 **자신들의 주장을 법원행정처가 무시**한다고 생각하면서 **조직적 반발의 수위**를 높일 수 있음

● 핵심 그룹이 조직적 반발의 수위를 높이면서 **법원행정처의 '무시', '불통' 이미지를 강조**할 경우 **당초 관심이 없던 다수의 일반 판사들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화**되면서 **핵심 그룹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**할 가능성이 큼

● 핵심 그룹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외국 사례, 논거들을 계속적으로 유포할 경우 핵심 그룹이 설정한 의제와 프레임에 법원행정처가 계속 끌려 다니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음 ⇨ **의제 선점 효과**

● 사법행정위원회 출범이 **언론에 이미 보도된 상황** ⇨ **'판사회의를 통한 위원 선출' 주장**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**어떻게든 언론에 설명하는 상황**에 이르게 될 것임

▣ 무시 전략에 따를 때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

● 법원행정처 차장 명의의 코트넷 공지문 게시

● 핵심 그룹은 자신들이 무시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직적 반발의 수위를 높임 ⇨ 법원행정처의 불통 이미지 강조

☑ **핵심 그룹이 사용할 수 있는 조직적 반발 수단**

1 **코트넷**에 **게시글** 연달아 올리기

2 **판사회의를 개최**하여 '사법행정위원회에 참여할 판사들은 판사회의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'는 내용의 **건의문을 채택**하거나 **사법행정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임의로 선출**

3 **연판장 등 공동 성명**

4 경향, 한겨레 등 **진보 성향 언론과의 공조**

- '법원행정처의 불통 이미지'에 공감하는 상당수의 일반 판사들이 핵심 그룹 지지
- 위기 상황 도래
-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핵심 그룹의 주장 일부 수용

2 일부 설명 전략

▣ 내용

- **원칙**적으로는 **법원행정처의 구상**을 **無色透明**하게 설명
- 다만, **핵심 그룹**이 주장하는 **'위원의 2/3 또는 적어도 과반수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'**을 **받아들일 수 없는 논거**를 **우회적·간접적인 방식으로** 설명

▣ 논거

- 핵심 그룹은 어차피 자신들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⇨ 목표는 **① 다수의 일반 판사들이 심리적 동요를 일으켜 핵심 그룹의 지지를 보내는 상황 방지** 및 **② 부정적 언론보도의 확산 방지**
- 법원행정처가 핵심 그룹의 주장에 **우회적·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답변**을 해 줄 경우 **법원행정처의 '불통', '일방통행' 이미지는 완화**될 수 있음 ⇨ 핵심 그룹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더라도 **다수의 일반 판사들이 핵심 그룹을 지지할 가능성 낮아짐** ⇨ **핵심 그룹의 고립화**

▣ 부작용

- **'무시 전략'의 논거**와 동일

- 핵심 그룹의 주장에 답변할 경우 **핵심 그룹의 주장을 둘러싼 논쟁**이 불필요하게 **확대될 우려**가 있음 ⇨ 핵심 그룹이 설정한 의제에 **법원행정처가 끌려 다니는 결과 ⇨ 사법행정위원회 출범의 취지가 크게 반감됨**

▣ **일부 설명 전략에 따를 때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**

● 법원행정처 차장 명의의 코트넷 공지문 게시

● 핵심 그룹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조직적 반발 시도

- ① 코트넷에 게시글 연달아 올리기, ② 판사회의 개최하여 건의문 채택 또는 사법행정위원회에 참석할 대표자 선출, ③ 진보성향 언론과의 공조

- 법원행정처가 핵심 그룹의 주장에 우회적·간접적이나마 응답한 이상, 핵심 그룹도 연판장 등 공동 성명을 할 명분이 없음

● 다수의 일반 판사는 핵심 그룹의 주장에 무관심

- 법원행정처의 응답과 설명이 일정 부분 논쟁은 만들 수 있지만, 법원행정처의 '친절한 이미지'가 구축됨으로써 다수의 일반 판사들이 심정적으로 핵심 그룹을 지지하게 되는 현상은 방지할 수 있음

나. 검토 의견 ⇨ 2 일부 설명 전략

▣ **법원행정처의 '친절한' 이미지 구축 & '불통' 이미지 강화 방지**

● 다수의 일반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의 '불통' 이미지에 대한 반감으로 소수의 핵심 그룹에 심정적 지지를 보내게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음 ⇨ 소수 핵심 그룹의 고립화 유도

▣ **핵심 그룹의 문제제기를 통한 논쟁 확대는 오히려 붐업(Boom-up)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음**

● 핵심 그룹의 문제제기는 과도하지 않는 한 사법행정위원회에 대한 적극적·긍정적 관심을 고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임

● 일부 설명 전략을 취하는 한 핵심 그룹의 문제제기가 과도한 방향으로

확대되어 다수 일반 판사의 공감을 얻는 방향으로 가기는 힘들 것임

5. [각론2] 일부 설명 전략에 따른 '대외적 설득 논리'

1 법관평의회 등 독일 사례를 원용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

☑ 법원행정처 차장 명의 공지문에 포함될 설득 논리(예시)

▶**사법행정권한이 행정조직인 법무부에 귀속**되어 **독립한 사법행정조직 체계를 갖지 못한 독일, 프랑스 등의 사례**는 독립된 사법행정조직을 갖추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는 바로 적용하기 어려우므로, **우리와 유사하게 독립된 사법행정조직을 갖추고 있는 미국 연방법원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 사례를 벤치마킹 대상**으로 삼았습니다.

2 미국연방사법회의 같은 전국법관회의를 설치하자는 주장에 대한 반박

☑ 법원행정처 차장 명의 공지문에 포함될 설득 논리(예시)

▶미국의 연방사법회의는 총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, 그 중 13명은 항소법원장이 당연직 위원을 맡고, 1명은 국제무역법원장이 맡으며, 나머지 12명은 Federal Circuit을 제외한 12개의 Circuit에서 각 Circuit별로 1명씩 선출된 지방법원 판사가 맡게 됩니다. **연혁적으로 미국의 연방사법회의는 연방항소법원장들로 구성된 회의체에 지방법원 판사들을 참여시킨 것입니다. 우리의 경우에는 현재 전국법원장회의가 미국의 연방사법회의와 가장 유사한 조직**이므로, **전국법원장회의를 미국의 연방사법회의와 유사하게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**해 보았습니다. 그러나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등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볼 때, 위와 같은 개편 방안은 **대법관회의와의 관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들을 초래**하므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.

3 사법행정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

☑ 법원행정처 차장 명의 공지문에 포함될 설득 논리(예시)

▶미국연방법원의 경우 연방사법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심도 깊은 토론 없이 사실상 그대로 추인하는 의례적인 행사로서의 성격이 강하고,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의 모습이 제대로 구현되는 것은 미국 연방법원의 상임위원회입니다. 미**국의 경우 전체 25개 상임위원회의 약 300명에 이르는 위원들을 미국연방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있으나, 우리의 경우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이 고등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제도를 설계**하였습니다. 한편,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토론이 가능하려면 위원의 수가 적정 규모로 유지되어야 하는데, **모든 법원장에게 위원 추천 권한을 부여할 경우 적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 권역, 심급, 직급, 성별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**

불가능해지므로, 추천권자는 고등법원장에 한정하였습니다. 실제 운용 과정에서 고등법원장은 소속 고등법원의 법관뿐만이 아니라 관내 모든 지방법원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위원을 추천하게 될 것입니다. **고등법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, 온라인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위원 참여를 희망하는 법관들의 자원 또는 추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.**

5 초기 성과 분석 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논리

☑ 공식적 명분·논리

▶"무엇보다도 위원회 제도의 조기 정착·연착륙을 위해서 현 시점에서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실천 가능하고 효율적인 안정적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함"

- "다양하고 실질적인 여러 시도는 위원회의 초기 성과를 관찰·분석한 후에도 늦지 않을 것임"

- 어떠한 이념적·실질적 논리를 제시하기보다 현실론과 방법론의 측면에서 신중론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을 것임
- 실제로 대부분의 법관들 역시, 위원회 출범 자체가 사법행정 패러다임의 대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, 최초에는 가급적 부작용이 덜한 방법을 택하는 데에 대하여 지지할 것임

6. 향후 계획

▣ 2. 25. 법원행정처 차장 명의 코트넷 공지문 게시

- 2. 26. 개최 예정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토론회 전에 공지문 게시 필요

▣ 2. 26. 통합실무지원단 구성

- 구성

- [단장] 사법지원총괄심의관

- [법원문화개선위원회]
  - 최○○, 문○○ 심의관, 조○○ 기획조정심의관, 기획제2심의관

- [재판제도발전위원회]

- 김○○(민사), 한○○(형사), 권○○(가사) 심의관

- **[코트넷 전용 공간 설치]**
  - 임○○ 정보화심의관

● 역할

- 사법행정위원회 안건 발굴
- 사전점검 항목 추출 및 준비
- 내부 관심도 제고 위한 홍보 방안 마련 <끝>